[] 편 성 직장민방위대 [] 이 전 [] 명의변경 [] 해 체

※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	하시기 바랍니다.						(앞 쪽
접수번호	접수일			j	^{持리기간}	즉시	
신 고 자	성 명(대표지	-)		주민	등록번호		
(지 원 자)	주 소			,			
민 방위 대	직장명						
	소재지						
이전 또는	번경 전						
명 의 변 경 사 항	변경 후						
이 전 • 명 의 변 경 • 해 체 사 유							
신 고 사 유 발 생 일							
		합계		의무자		지원자	
편 성 상 황	계	남	여	コナバ	남		여
위와 같이 신고합니다	라 .						
					년	월	일
		신고인				(서명 5	돈는 인)
시장 • 군수 • 구청경	당 귀하						

유의사항

- 1.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(「민방위기본법 시행령」 제26조제3항).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(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제1 항제1호)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고 인	경 유 기 관	처 리 기 관		
직 장 장		>	시장・군수・구청장	
			V	
			관계 기관	